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나기보 의원 외 23명)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나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나기보·도기욱·박권현
방유봉·배진석·안희영
이수경·조주홍·조현일
최병준·김명호·김봉교
김희수·남영숙·박창석
정세현·김진욱·박용선
이칠구·김상조·박영서
김하수·홍정근·임미애
의원(24명)

찬 성 자 : - 명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아이”, “보호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재정 마련 방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사업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시·군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아이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하는 시·군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사.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
- 규제심사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서비스제공기관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수준, 인력, 제공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하는 시·군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하여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신청·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① 법 제11조 제4항 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기관의 이전

2. 근무인력 전원(全員)의 교체

② 법 제11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여성가족정책관	제1조	<p><문장 수정 필요> 이 조례는 =>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등에 따라</p>
	제5조제3항	<p><문장 수정 필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 지원사업</p>
	제6조	<p><문장 수정 필요> 제1항: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 지원사업 제2항: 위임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p> </div>
	부칙	<p><문장 수정 필요> 날로부터 => 날부터</p>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구 열
입 안 주 무 부 서	의원발의	통 보 (조 치) 일	2019. 4.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여성가족 정책관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는 본문 중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사업” 은 바우처사업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5조

나.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여성가족부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기준으로 산출
- 2020년부터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

다. 비용추계의 결과

- 제정되는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 경우 [표 1]과 같이 1차년도인 2019년도에 26,679백만원이 소요되고 차후 년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율 1.14%를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5년간 총 136,47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19 ~ 2023(5차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 아이돌봄 지원사업	26,679	26,983	27,291	27,602	27,917	136,472
	소계(b)	26,679	26,983	27,291	27,602	27,917	136,472
□ 총 비용(a-b)		26,679	26,983	27,291	27,602	27,917	136,472

라.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8,675	18,889	19,104	19,322	19,541	95,531
도비	일반회계	2,401	2,428	2,456	2,484	2,513	12,282
	기금						
시·군비		5,603	5,666	5,731	5,796	5,863	28,659
민간							
기타							
합계		26,679	26,983	27,291	27,602	27,917	136,472

마. 부대의견 : 없음

바.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6급 김선옥(880-453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 도지사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추계 방법

- 2019년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비를 기초로 하여 최근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14%를 매년 적용하여 증가액을 반영

* 2016년- 1.0%, 2017년-1.9%, 2018년-1.5% 『출처: e-나라지표』

** (1.0+1.9+1.5)/3 =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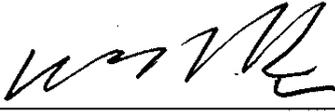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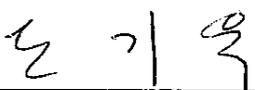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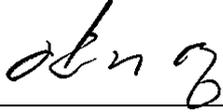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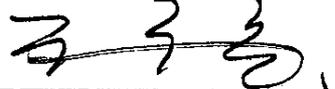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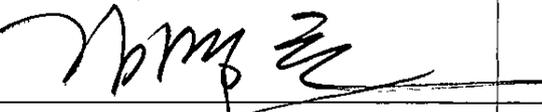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 없음

예산담당관실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비용수반)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5조)	
담당부서 비용추계	○ 총 136,472백만원(국비 95,531 도비 12,282 시군비 28,659) -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함 - 여성가족부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준으로 산출 - 2020년부터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6,472백만원으로 도비부담액은 12,28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 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과 아이돌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훈련사업, 처우개선사업, 홍보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국비 매칭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 시에는 유사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비슷한 기구간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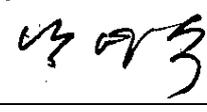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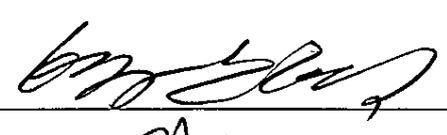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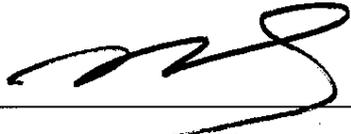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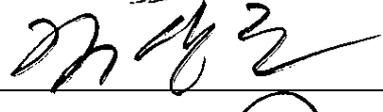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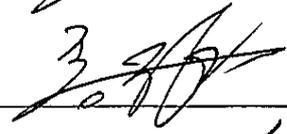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나 기 보		
노 기 옥		
박 권 현		
박 구 봉		
배 진 석		
안 희 영		
이 수 경		
조 주 흥		
조 현 일		
최 병 권		
김 영 호		
김 용 인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김희우		
남영숙		
박창석		
정세현		
김진욱		
박용선		
이철구		
김상조		
박영서		
김민석		
홍재근		
오미애		